

노인의 범죄피해특성에 관한 연구

김 상 군 *

◇ 목 차 ◇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결과 및 해석
 - V.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최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정보화는 삶의 질의 급격한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임은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의 노인인구는 현재 전체인구의 약 7.1%이나 앞으로 2020년에는 13.2%로 증가할 전망이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형으로 발전

*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하면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노령화사회는 지금보다 다양한 사회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다.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노인문제는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전통적인 사회에 있어서의 이웃과 친구를 멀리하게 하였고, 자식의 도시이주로 노인의 고독과 소외감이 증가하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윤리의식이 희박해지는 아노미적 사회현상을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오늘날의 노인문제에서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 바로 범죄피해이고,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부부가 흉기로 피살당했다'는 범죄피해사건보도를 접한 바와 같이 우리의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¹⁾ 노인은 일반적으로 신체의 반응속도가 느리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범인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독자적인 범죄제지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에 상당히 취약하다.

범죄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문제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형사정책은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하는 데 몰두하였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형사사법상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피해자는 어떤 대상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²⁾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범죄피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형사절차상의 피해자인권보장,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제정,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신고자보호제도의 입법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한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노인범죄피해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³⁾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노인의 범죄피해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서 피해노인의 특성을 연구하여 형사사법적 대응과 사회복지적 차원의 대안을 강구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노인의 범죄피해경험과 유형, 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와 행동적 반응, 노인범죄피해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동아일보, 2000년 5월 20일자, 31면 참고.

2) 민건식, "범죄피해자에게 눈을 돌리자", 형사정책연구소식 제41호, 1997, p. 2.

3) P. Janson and K. R. Louise, "Crime and the Elderly :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and Fear," The Gerontologist, Vol. 23, No.2, 1983, p. 203.

II. 이론적 배경

1. 범죄피해자관련이론의 검토

지금까지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동향을 간단히 분석해보면, 전국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형사절차상의 피해자권리,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구조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노인과 장애인 등 범죄피해의 가능성성이 많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로서 이론적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나는 범죄피해에 관한 이론을 통해서 노인들의 범죄피해 가능성과 그것의 예방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또 하나는 범죄피해자의 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이다.

먼저 대표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이론으로는 생활양식이론, 일상활동이론, 근접성가설, 동일집단가설,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이 있다.

첫째, 생활양식이론은 힌데랑(Hindelang), 간프레드슨(Gottfredson)과 가로팔로(garofalo)에 의해서 발전되었으며, 초기에는 사회집단간의 폭력범죄피해위험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지만 점차적으로 재산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생활양식이란 “직업적 활동과 여가활동을 포함한 매일의 일상적 활동”을 의미한다.⁴⁾ 생활양식 이론이 강조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율의 차이는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이며, 여기서 개인의 생활양식이 범죄 피해의 위험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일상활동이론은 생활양식이론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두 이론이 모두 일상활동 혹은 생활양식의 유형이 어떻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해주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은 일상활동을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어떠한 종류의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활동으로서, 기본적인 음식, 집, 성적 배출, 여가,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 자녀양육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직업활동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으며,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범죄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⁵⁾

4) M. S. Hindelang, M. Gottfredson, and J. Garofalo, *Victims of Personal Crime*, Cambridge, 1978, p. 241.

5) L. E. Cohen and Felson,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 A Routine Activity Approach”,

셋째, 동일집단가설은 범죄자와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분리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고, 범죄자의 생활양식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 속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범죄피해자보고에 범죄행위를 하는 범죄자 자신이 많이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에 의해 입증이 되고 있다. 폭행피해자는 대부분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강도나 폭행 등과 같은 범죄피해에 있어서 개인적인 피해와 비행과의 상관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이한 집단으로 분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순이며, 범죄를 발생하게 하는 여건이란 모든 인간에 있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향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⁶⁾

넷째, 근접성가설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근접한 지역에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비슷한 배경이나 환경의 피해자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관점의 이론이다.⁷⁾ 이 근접성가설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생활양식에 관계없이 범죄가 많은 지역에 살면 범죄자와 접촉하는 확률이 증가한다는 논리적 가정에 그 기초를 둔다. 피해자는 범죄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은 잘못된 장소와 잘못된 시간에 있다는 것이다. 가해의 가능성은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어디에 사느냐에 더 의존한다는 이 가설의 의미는 그 지역의 범죄수준이 개인적 특성보다 범죄피해와의 기회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일상적 활동이론과는 배치되는 이론이다.

다섯째,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은 셜스탁(Sengstock)에 의해서 발전된 이론이다. 그는 범죄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에 일어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⁸⁾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 이론은 범죄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에 상호작용적의 형태를 띠고 있고, 피해자의 지나친 행동이나 위축된 행동이 범죄피해의 가능성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의 주도권과 대응, 작용과 반작용, 동기와 의도를 강조하는 역학적 관계로 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피해이론을 특별히 검토하여 적정한 이론을 선정하기보다는 피해이론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노인의 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위에서 제시한 피해이론을 토대로 해서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생활양식이나 일상활동이론, 그리고 근접성가설과 동일집단가설, 상호작용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4, p. 593.

6) S. Larry, Criminology, Univ. of Massachusetts, 1992, p. 115.

7) Ibid., pp. 116-117.

8) M. C. Sengstock, Elderly Victims of Crime : a Refinement of Theory in Victimology, 1982, p. 115.

이론을 동시에 고려하여 노인의 범죄피해실태와 두려움의 정도를 검토할 것이다.

2.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이론의 검토

다음은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이론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보상은 기원전 1775년경 함무라비 법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⁹⁾ 그 이후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다시 국가의 범죄피해자지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와 국민의 기본적인 관계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규율되는 현대 민주국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당연한 것으로 비춰진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특히 범죄피해자보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 이론을 살펴보았다.

첫째, 국가의 엄격책임이론이다. 범죄피해자는 국가에 대해서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그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가 범죄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데 그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책임에 근거해서 발생한 범죄피해를 국가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한다면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서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국가는 범죄피해의 범위에 관계없이 보상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¹⁰⁾

둘째, 사회복지이론이다. 국가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하는 인도주의적인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관련된 시민들의 사회적인 양심에 근거해서 부여되며 사회적인 보험의 형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비, 동정심 및 자선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상의 범위는 일정한 제한을 갖게 된다고 한다.¹¹⁾

셋째, 사회보험이론이다. 건강상실이나 실업에 대해서 일정한 급여가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처럼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발생가능하며 또한 예측불가능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급부가 제공

9)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12, pp. 33-34에서 재인용 : 이에 의하면 그 지역의 통치자는 강도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 그 강도행위자가 잡히지 않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그 상속자에게 국고에서 은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0) Elias, Impact of Compensation on Crime Victims, Criminal Justice and Government, 1997, p. 39.

11) Elias, Ibid, p. 41.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결국 모든 납세자들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결국 그렇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혼자 부담하였을 위험을 분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한다.¹²⁾

넷째, 사회적 의무이론이다. 개인과 사회는 형사사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피해자에 대해서 지급될 범죄자의 재산이 정부의 고갈된 재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역사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전까지 재정을 위해서 사용되던 범죄자의 배상을 다시 범죄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¹³⁾

이상과 같이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어떠한 이론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완전하게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한 견해만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의 정당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에 못지 않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익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지고 있다. 이와 같은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익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요약하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국가의 엄격책임이론에 의거한 구조가 마땅하다고 본다.¹⁴⁾ 특히 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는 경제적 활동능력과 범죄대항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한 성인들과 비교하여 특별한 구조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III. 연구방법

노인에 대한 개념은 사회, 경제, 심리, 생리, 의학적인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시기에 처한 자로서 정상적인 생활기능과 직업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각종 통계에 있어서는 60세 이상자를 노인으로 보는 것이 통례이므로,¹⁵⁾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연령

12) Karmen, Crime Victims, 1987, p. 307.

13) Elias, Ibid., p. 310.

14) 송광섭,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제의 현황과 범죄피해자보호의 새로운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1997, p. 107.

15) 우리나라에서는 사회통념상 희갑이 되면 노인으로 대접하여 왔으나, 시대적 차이에 따라 다르며, 경제기획원에서는 경제활동인구를 14-59세로 규정하여 60세 이상을, 생활보호법에서는

적 범위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하였다.

표본의 선정은 전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 표집이 바람직하나 연구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대구지역으로 한정하였다.¹⁶⁾ 표집은 총화표출방법을 이용하여 대구직할시의 수성구, 북구, 남구, 동구, 서구, 중구, 달서구 등 7개 구에서 구별 2개동씩 14개동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고, 각 동별로 2개동씩 총 24개동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설문조사자인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6명에 대하여 설문조사에 관한 방법을 교육시키고, 각 가정과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작성은 조사대상이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혔다.

본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학력주거형태, 가족구성 등)과 그들의 일상생활 및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문항, 범죄피해경험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범죄피해경험은 절도, 강도, 사기, 폭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WIN8.0을 이용하여 기초통계,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논문의 조상대상자는 총200명의 응답인원 중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 31명의 설문자를 제외한 169명을 최종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보면 <표 1>과 같다.

65세 이상을,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각급 공무원의 퇴직연령에서는 일반공무원 60세, 교육공무원 62세, 일반사기업체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국가간에 다소의 연령차를 보이고 있다.

16) 대구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2백 2십여 만 명으로 이중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분포를 보면 60세에서 69세가 83,308명, 70세에서 79세가 36,947명, 80세 이상이 10,015명으로 대구시 전체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내 용	빈 도	%
성 별	남	110	65.1
	여	59	34.9
연 령	61-70세	49	29
	71-80세	78	46.2
	81세 이상	42	24.9
주거형태	단독주택	103	60.9
	아파트	47	27.8
	다가구주택	17	10.1
	기타(양로원 등)	2	1.2
동거유형	배우자 및 자식과 같이	26	15.4
	배우자와 둘이서	59	34.9
	혼자서	18	10.7
	자식과 같이	63	34.7
	기타	3	1.8

표에서 보면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노인이 110명, 여자노인이 59명이 조사에 협조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61세에서 70세까지의 노인은 49명, 71세에서 80세까지의 노인은 78명, 81세 이상이 되는 노인도 42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인 노인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103명으로 60.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아파트 27.8%, 다가구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10.1%의 순이었다.

한편 노인들이 현재 누구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배우자와 단둘이서 살고 있는 경우가 34.9%, 배우자가 죽고 자식집에 더불어 살고 있는 경우는 34.7%, 배우자와 자식 등 2대 내지 3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15.4%, 혼자서 살고 있는 노인도 10.7%나 되었다.

2. 변수간 상관관계분석

다음은 변수간에 얼마나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각 변수간의 독립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표 2> 중요변수간 상관관계표

구분	성별	연령	주거 형태	동거 유형	생활 비	두려 움 1	두려 움 2	두려 움 3	피해 경험	피해 유형	피해 회수	신고 유무	신고 만족	경찰 노력
1	1.0													
2	0.16a	1.0												
3	.02	.02	1.0											
4	.27c	.16a	.06	1.0										
5	.06	.34c	.17a	.18a	1.0									
6	-.18b	.06	-.09	.14	.12	1.0								
7	-.12	.11	-.11	.17a	.13	.65c	1.0							
8	-.10	.01	.04	.02	.16a	.48c	.57c	1.0						
9	.10	-.12	-.08	.03	-.01	.22b	.17a	.10	1.0					
10	.40	.03	.28	.02	-.02	-.3b	-.39	-.08	.01	1.0				
11	-.50	-.62b	.62b	-.04	-.22	-.3b	-.22	.19	.01	.06	1.0			
12	-.40	.06	.16	.33	.34	.22	.17	.20	.01	-.45	.36	1.0		
13	-.11	.19	-.10	.21	-.34	.17	.03	.16	.01	-.02	.43	.01	1.0	
14	.09	.07	.01	.12	.15	.09	.05	.15a	-.01	-.14	-.30	.05	-.59a	1.0

a=P<.05, b=P<.005, c=P<.001

위의 표에서 제시된 주요 변수간의 상관점수를 보면, 먼저 성별과 범죄의 두려움은 -.18로 P<.05에서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령과 피해회수는 -.62로 P<.01에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에 있으며, 주거형태와 피해회수도 .62로 P<.0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의하였고, 두려움간의 상관, 즉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외출을 할 때도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r=.62, P<.01)으로 밝혀졌다.

또 피해경험과 두려움간의 상관은 .22로 P<.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다른 동료노인들의 범죄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범죄두려움간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r=.30, r=.29, r=.17)으로 밝혀진 것은 자신이 직접범죄피해경험이 없더라고 비슷한 나이의 피해경험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상관관계의 분석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연령에 따라서 피해경험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과 또 단독주택이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범죄피해의 경험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방범 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는 사실과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방어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 창문을 단속하는 등의 방범단속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정도

다음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설문은 집에서의 범죄피해두려움, 외출시의 범죄피해두려움, 범죄피해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외부활동을 삼가하는 행동적 반응의 정도로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분석하였다.

가. 주거시설에서의 범죄피해두려움

<표 3> 가정에서의 두려움정도

N=169

응답결과	많이 있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빈도	34	19	118
비율	20.1	11.3	68.6

앞에서 제시한 표를 보는 바와 같이 집에서의 범죄피해두려움 정도를 세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노인들이 집에 있을 때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비율은 20.1%이며 보통이다가 11.3%,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68.6%로 2/3 이상이 집에 있을 때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31.4%는 집에 있을 때도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노인들은 집에 있을 때도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외출시의 범죄피해 두려움

<표 4> 외출시의 피해두려움

N=169

응답결과	많이 있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빈 도	42	25	102
비 율	24.9	14.8	60.4

표를 보는 바와 같이 노인들은 집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집에 있을 때의 범죄피해두려움정도는 31.4%이나 외출시에는 39.7%로 높게 나타났다. 즉, 노인들은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외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내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심한 경우 외출자체를 삼가하는 행동을 보여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노인의 범죄피해 경험

다음은 노인들의 범죄피해경험과 피해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는 노인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범죄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가. 범죄피해경험의 유무

<표 5> 노인의 범죄피해경험

N=169

응답결과	있 다	없 다
빈 도	19	150
비 율	11.2	88.8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부터 2000년 4월까지의 동안에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은 11.2%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노인 10명 중에 한 명은 각종 유형의 범죄피해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1994년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인 15.7%의 비율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¹⁷⁾

나. 범죄피해 유형

<표 6> 범죄피해의 유형

N=169

응답결과	소매치기	사기	절도	폭행	강도	기타
빈도	6	2	7	2	1	1
비율	31.6	10.5	38.6	10.5	5.3	5.3

표를 보는 바와 같이 절도피해가 38.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소매치기 또는 날치기로 31.6%, 사기와 폭행이 각각 10.5%, 다음이 강도 등 기타 범죄피해가 각각 5.3%로 분석되었다. 노인의 범죄피해 중에서 절도유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대부분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출입문, 창문 등에 대한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소매치기나 날치기를 많이 당하는 이유는 노인이 소매치기나 날치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주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행동이 부자유스러워 피해발생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치기범의 주요범행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기범이 1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노인 스스로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많은 수의 노인들이 사기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⁸⁾

17) 이전종 외 1인,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5, p. 93. : 이 논문의 피해경험유무는 중복피해사례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는 15.7%보다 적다.

18) 이전종, 전계논문, pp. 100-101 : 사기범은 주로 동네이웃이나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많이 당하고(56.0%),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어서 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69.2%라고 보고하였다.

다. 범죄피해횟수

<표 7> 피해횟수

N=18

피해횟수	1회	2~3회	4~5회	6회이상
빈 도	15	2		1
비 율	78.9	15.8		5.3

표를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한 번의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으며(전체 78.9%), 2 내지 3회를 당한 노인들도 15.8%나 되어 노인들이 반복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범죄피해를 당하고 난 후에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노인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급격히 증가하여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무력감에 빠지거나, 자신감을 잃게 되며, 또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여 사회생활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범죄피해가 반복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자치단체, 경찰 등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주요변수간의 교차분석결과

다음은 주요변수간의 카이스퀘어 검증을 한 결과이다. 주요변수로는 성별과 피해경험, 연령과 피해경험, 주거형태와 피해경험, 피해두려움과 피해경험의 관계, 범죄피해의 두려움과 경찰의 방범노력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노인의 성별에 따른 피해경험

다음은 남·여 노인에 따라서 범죄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이다.

<표 8> 성별과 피해경험간의 교차분석결과

구 분		피해경험		계
		있다	없다	
성 별	남	15	95	110
	여	4	55	59
계		19	150	169

df=1, Chi-Square=1.80, NS(Not Significance)

표를 보는 바와 같이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은 남자가 30명, 여자가 8명이고, 피해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자가 190명, 여자가 110명으로 카이스퀘어값이 7.80이고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범죄피해의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일상적 활동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범죄피해의 경험은 일상활동이 많은 사람일수록 잠재적인 피해의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이론이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자료는 일상활동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두운 골목길이 있는 거리를 가능한 피하거나 출입문, 창문 등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나. 연령에 따른 범죄피해경험

다음에서 제시된 표는 노인의 연령과 범죄피해의 경험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이다.

<표 9> 연령과 범죄피해경험의 교차분석결과

구 分		피해경험		계
		있다	없다	
연령	61 - 70세	2	47	49
	71 - 80세	11	67	78
81세 이상		6	36	42
계		19	150	169

df=2, Chi-Square=3.54, NS(Not Significance)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1세에서 70세까지 노인의 피해경험은 4명, 71세에서 80세까지 노인의 범죄피해경험은 22명, 81세 이상은 12명으로 카이스퀘어 검증결과, 카이스퀘어 값이 3.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연령에 따라 범죄피해의 경험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이다,

다. 주거형태에 따른 범죄피해경험

다음은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형태와 범죄피해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한 결과이다.

[표 10] 주거형태와 범죄피해경험의 교차분석결과

구 분		피해경험		계
		있다	없다	
주거유형	단독주택	11	92	103
	아파트	5	42	47
	다가구주택	2	15	17
	기타	1	1	1
계		19	150	169

df=3, Chi-Square=8.07, P<.05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범죄피해경험은 22명,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범죄피해경험은 14명, 기타 주거지역은 2명으로 카이스퀘어 값이 8.07로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범죄피해의 경험은 주거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들이 단독주택에 거주할 수록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라. 피해경험에 따른 범죄피해두려움

다음의 표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정도와 범죄피해경험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이다.

<표 11> 범죄피해경험과 두려움의 교차분석결과

구 분		피해경험		계
		있다	없다	
피해두려움	많다	9	25	34
	보통이다	1	18	19
	없다	9	107	116
계		19	150	169

df=2, Chi-Square=10.05, P<.01

표에서 제시된 결과를 보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의 피해경험은 18명, 보통은 2명,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가 18명으로 카이스퀘어검증결과 값이 10.05로 P<.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평소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노인이 피해경험이 많은 것은 피해의 경험이 피해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영향변수로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평소에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노인이 범죄피해의 경험이 많은 것은 피해의 두려움이 없음으로써 평소 방범을 위한 주의력이 부족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피해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마. 경찰의 방범노력인식에 따른 두려움

다음은 경찰의 방범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범죄피해두려움의 차이를 카이스퀘어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표 12> 경찰의 방범노력과 두려움의 교차분석결과

구 分		두려움 정도			계
		많다	보통이다	없다	
경찰노력	만족	17	7	4	28
	보통	8	4	12	24
불만족		42	33	40	115
계		67	44	56	167

df=4, Chi-Square=9.80, P<.05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나 보통일 때보다 불만족일 때 범죄피해의 두려움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카이스케어 검증결과 카이스케어 값이 9.80이고, $P<.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결국 노인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V. 요약 및 결론

이상과 같이 노인의 범죄피해실태와 특성에 관하여 실증적인 조사결과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인지적 판단능력과 신체적 대응능력이 미흡하여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통해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따라서 범죄피해의 경험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다른 이웃들과 공동으로 거주하고, 비교적 방범시설이 잘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는 방법 면에서 취약한 시설인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범죄피해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피해의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최근 1년 간 범죄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피해두려움으로 야간에 외출을 삼가하고, 집안에 있을 때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불안장애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노인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는 범죄피해경험 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조사결과 노인의 범죄피해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범죄피해는 연령이나 노인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범죄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형태, 일상적인 생활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의 시사하는 결과이다.

넷째, 경찰의 방범활동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범죄피해의 두려움이 낮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들의 생활주변을 중심으로 경찰에 의한 방범순찰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노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조치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노인의 범죄피해경험이 조사대상자의 11.2%

로 10명 중 한 명이 범죄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으로 상당수의 노인들이 범죄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소매치기(31.6%)나 절도(38.6%) 등 일상적인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피해유형이 많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노인을 범죄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범창의 설치, 출입문의 보강, 범죄신고전화의 벨 설치, 방범요령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서, 자원봉사자 등과의 범죄피해예방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범죄피해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피해를 당한 노인들은 대부분의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서비스의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민간경비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경제적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민간경비업체와 계약을 하여 외출시의 대인경호나 주거시설에 대한 경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민간경비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실증적으로 하였다는 점과 범죄피해노인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연구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인 표본의 수가 적다는 점과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조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범죄피해예방, 피해유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지원, 경제적 피해구조 등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국내문헌

- 민건식, “범죄피해자에게 눈을 돌리자”, 형사정책연구소식 제41호, 1997.
-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1998.
- 송광섭,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제의 현황과 범죄피해자보호의 새로운 과제”, 피해자학 연구 제5호, 1997.
-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12.
-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지원제도”, 피해자학 연구, 1999.
- 조균석,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운용상황”,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1992.
- 조병인,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체계 : 법률과 실제”, 형사정책연구 9권 3호, 1998. 동아 일보, 2000년 5월 20일자, 사회면 31면 참고

■ 외국문헌

- Elias, Impact of Compensation on Crime Victims, Criminal Justice and Government, 1997.
- L. E. Cohen and Felson,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4.
- M. C. Sengstock, Elderly Victims of Crime : a Refinement of Theory in Victimology, 1982.
- M. S. Hindelang, M. Gottfredson, and J. Garofalo, Victims of Personal Crime, Cambridge, 1978.
- P. Janson and K. R. Louise, “Crime and the Elderly :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and Fear,” The Gerontologist, Vol. 23, No.2, 1983.
- S. Larry, Criminology, Univ. of Massachusetts, 1992.

ABSTRACT

A Study on Criminal Victimization of the Old

By Kim, Sang Kyun

The purpose of thesis is to examine the two aspects of realities and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old.

It also intends to provide useful date for criminal victimization prevention strategies and looks for alternatives promoting social welfare of the old in our society.

For this, some important theories about criminal victimization and compensating of crime victims are reviewed as theoretical backgrounds.

In addition to theoretical reviews, to identify realities of criminal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among the old, empirical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about 200 respondents of 60 years old in Taegu.

설 문 지

1. 귀하의 성별은?

- 1) 남 2) 여

2. 귀하의 연세는 몇세입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세

3.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가구주택)
4) 양로원 5) 기타()

4. 귀하는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 1) 배우자 및 자식들과 2) 배우자와 둘이서 3) 혼자서
4) 친척과 같이 5) 자식과 같이 6) 기타()

5. 귀하는 생활비나 용돈을 어떻게 벌고 있습니까?

- 1) 월급으로 2) 저축해둔 돈으로 3) 연금을 받아서
4) 자식이 주는 용돈으로 5) 정부보조금으로

6. 귀하는 밤에 집에 있을 때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 1) 그렇다 2) 그저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7. 귀하는 밤에 혼자 걸어갈 때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 1) 그렇다 2) 그저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8. 귀하는 범죄피해가 두려워서 밤에 외출을 삼가십니까?

- 1) 그렇다 2) 그저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9. 귀하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9-1. 있다면 어떤 유형의 범죄피해입니까?(피해경험이 있는 분만 응답)

- 1) 소매치기 또는 날치기 2) 사기 3) 절도
4) 폭행 5) 기타()

9-2. 몇 번 정도 있습니까?(피해경험이 있는 분만 응답)

- 1) 한 번
- 2) 두세 번
- 3) 네다섯 번
- 4) 여섯 번 이상

10. 귀하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노인들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11. 귀하는 국가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1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시나 구청, 동에서 노인의 범죄피해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 3) 모르겠다

13. 귀하는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 3) 모르겠다